총포 등 검사업무 규정

(603)

총포 등 검사업무 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검사의 종류)

제2장 검 사

제4조(검사방법)

제5조(총포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

제5조의2(분사기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

제5조의3(전자충격기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

제5조의4(석궁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

제6조(인감등록승인 및 변경사항 보고)

제7조(검사시행기간 및 휴일)

제8조(검사원의 민원예방)

제9조(검사신청)

제10조(검사일 통보)

제11조(검사의 표시)

제3장 수수료

제12조(검사수수료)

제4장 기 타

제13조(보고)

제14조(기타)

부 칙

총포 등 검사업무 규정

1989. 3.23 제정
1990. 5. 8 개정
1991.11.22 개정
1999. 1. 1 개정
2001. 2. 3 개정
2004.11.18 개정
2005.10.31 개정
2006. 3. 8 개정
2012. 6. 1 개정
2014. 3.31 개정
2015. 1. 1 개정
2016. 8. 1 개정
2017.11. 1 개정
2020. 4.28 개정
2020.11.27 개정
2024.12.19 개정
2025. 8.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는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1, 2016.8.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개정 1999.1.1)

②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성능개조 여부검사.

제3조(검사의 종류)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검사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삭제(2001.2.3)

②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제조허가를 받아 처음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검사) (개정 2025.8.29.)

③ 제조품 안전검사(제2항의 검사를 거쳐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검사)

④ 수입품 안전검사(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검사)

⑤ 성능개조 여부검사(소지허가를 받은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성능검사)

제2장 검 사

제4조(검사방법)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등의 검사는 검사대상인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 총포는 기관부 왼쪽,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은 손잡이 부위 또는 몸통 부위에 소정의 합격표시(스티커 부착)를 하고, 출처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임시영치 증명서(불법무기 자진신고 된 무기)] 에 검사필 스티커부착 및 검사원 인장을 날인하고 협회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04.11.18)

②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검사는 협회 또는 제조업소의 검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 검사를 한 때에는 제3-1호 서식에 검사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제조번호 등을 기록 유지하고 검사를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11.18)

④ 검사업무규정 제2조에 적용하는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 별표16, 별표16-2, 별표16-3, 별표16-4에 의거 육안 및 측정검사를 실시한다.

⑤ 검사항목 중 1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되어도 종합판정은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조정가능한 것은 이를 조정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총포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 총포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삭제(2001.2.3)

②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 기준 및 제조품안전검사·수입품안전검사·성능개조여부검사. (별표1의 전체항목)(개정 2004.11.18., 2025.8.29.)

③ 제조품 및 수입품 안전검사의 경우 안전도(내압) 시험 및 성능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11.18)

제5조의2(분사기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 분사기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삭제(2001.2.3)

②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 기준 및 제조품안전검사·수입품안전검사·성능개조여부검사.(별표2의 전체항목)(개정 2004.11.18., 2025.8.29.)

③ 제조품 및 수입품 안전검사의 경우 안전도 시험 및 성분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11.18)

제5조의3(전자충격기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 전자충격기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삭제(2001.2.3)

②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기준 및 제조품안전검사·수입품안전검사·성능개조여부검사.(별표3의 전체항목)(개정 2004.11.18., 2025.8.29.)

③ 제조품 및 수입품 안전검사의 경우 안전도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3.8)

제5조의4(석궁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 석궁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삭제(2001.2.5)

②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기준 및 제조품안전검사·수입품안전검사·성능개조여부검사(별표4의 전체항목)(개정 2004.11.18., 2025.8.29.)

③ 제조품 및 수입품 안전검사의 경우 안전도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3.8)

제6조(인감등록 승인 및 변경사항 보고) ① 협회 이사장은 검사합격필증인감(합격표시스티커, 출처증명서용 검사필스티커, 검사원 인감)을 별지5호 서식에 의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11.18)

② 협회 이사장은 검사현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 관청에서는 신규 소지허가시 출처증명서용 검사필 스티커와 검사원 실인을 인감과 대조 확인 후 의문이 있을때는 협회로 문의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1.18)

④ 출처증명서에 사용하는 검사필증 일련번호는 영어 알파벳과 다섯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예:A00001)(개정 2006.3.8)

제7조(검사시행기간 및 휴일) 검사는 공휴일 및 일과시간 외에도 필요시에는 검사할 수 있다.

제8조(검사원의 민원예방) 검사원은 공정하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검사신청) ① 검사는 검사요청일 1일전 14시까지 수수료를 입금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을 가지고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

② 검사우선순위는 접수순에 의하여 실시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체와 협조하여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06.3.8)

③ 신청일 또는 수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검사 1일 전까지 협회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1)

제10조(검사일 통보) 검사신청서를 받는 즉시 검사일정을 해당업소에 전화로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검사일 지연시 지연사유 통보)(개정 1999.1.1)

제11조(검사의 표시)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의 검사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합격 또는 불합격 표시를 문자 또는 기호("V")로 표시한다.(개정 2004.11.18)

제3장 수 수 료

제12조(검사수수료) ① 검사수수료는 협회 정관 제33조에 따른다.(개정 2006.3.8., 2025.8.29.)

1. 제조시험제품종합검사

   가. 장약총 : 10만원

   나. 공기총 : 5만원

   다. 분사기 : 5만원

   라. 전자충격기 : 5만원

   마. 석궁 : 5만원

2. 제조품안전검사

   가. 장약총 : 3,000원

   나. 공기총 : 2,000원

   다. 분사기 : 생산자공급가격의 2%

   라. 전자충격기 : 생산자공급가격의 2%

   마. 석궁 : 생산자공급가격의 2%

3. 수입품 안전검사

가. 장약총 : 3,000원

나. 공기총 : 2,000원

다. 분사기 : 수입원가의 2%

라. 전자충격기 : 수입원가의 2%

라. 석궁 : 수입원가의 2%

4. 삭제(2001. 2. 5)

5. 삭제(2001. 2. 5)

② 제조회사는 검사신청시, 검사수수료를 협회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8.29.)

③ 상임이사는 월말에 검사결과보고서와 검사수수료 입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사원은 검사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없다.

제4장 기 타

제13조(보고) 협회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검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월1회 (개정 1999.1.1)

② 검사필증 일련번호대장(별지 서식 제3호) 월1회(개정 2004.11.18)

③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검사실적보고서(별지 서식 제4호)월1회 (개정 1999. 1. 1)

④ 인감등록(변경)사항보고서(별지 서식 제5호)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개정 1999.1.1)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이사장이 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

①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3)

①이 규정은 200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8)

①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0. 31)

①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8)

①이 규정은 200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1)

①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31)

①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2015. 1.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제외한 다른 규정 중 “팀”을 “부서”로, “총무팀장”을 “운영지원처장”으로, “기획감사팀”을 “기획감사실”로, “교육홍보팀”을 “교육홍보처”로, “회원관리팀”을 “회원사무처”로, “연구개발팀”을 “연구개발처”로, “총포검사팀”을 “총포안전처”로, “화약감정팀”을 “화약안전처”로 한다.

부 칙(2016. 8. 1)

①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

①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8)

①이 규정은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27)

①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19.)

①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8. 29)

①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20.4.28., 2025.8.29.)

총포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

1. 성능개조여부 검사기준

총종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 및 합격기준
총 및 포	구조형식	가. 구조형식의 원형유지상태 검사	구조형식의 변형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기관부 및 총신의 원형유지상태 검사	기관부 및 총신의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다. 제조번호의 타각(打刻) 유지상태 검사	총포 제조번호의 타각에 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 및 제조품·수입품 안전검사 기준

총종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 및 합격기준	검사요령
권총·소총	구조형식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일반측정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제조한 총포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일반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전체길이, 총열길이, 노리쇠뭉치, 기관부, 내·외경 등이 설계도면과 동일한가를 검사
		나. 격발장치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경찰장비는 제외한다)	노리쇠를 후퇴전진 시킨 후 격발하여 자동 및 연속격발이 되는지 여부를 검사(경찰장비 제외)
		다. 방아쇠압력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일 것(사격총은 제외한다)	방아쇠 측정기 추 1kg을 방아쇠에 걸어 격발여부를 검사(사격총 제외)
		라. 조준경 부착장치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사격총은 제외한다)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사격총 제외)

권총·소총	구조형식	마.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제조연도 및 번호·형식·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몸통부분에 제조국명, 총포의 제조업자와 제품의 영문명 및 구경, 총포의 제조번호(제조회사의 영문약자 2자리 및 제조년도 2자와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 6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말함) 10자리를 오목새김 또는 돋을새김으로 할 것(수입총포 제외, 수입총은 제조국의 표시등을 사용함)
		바. 안전장치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노리쇠를 후퇴전진 시킨 후 안전장치를 잠금 위치에서 격발하여 격발되지 않아야하고 풀림 위치에서 격발하여 격발되는지 여부 검사. 또한, 고정 시 정확한 위치가 유지되는지 검사
		사. 총의 구경	0.22인치 이상 0.38인치 이하일 것	내경을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안전도(내압)시험	가. 기관부·약실 및 총열의 내압시험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약실에 총포의 적합한 실포, 공포탄 1발을 약실에 장전, 검사대에 총을 거치하여 발사하고 반복해서 5발을 시험발사 후 팽창, 균열, 파열 등을 보아 검사합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수입품 및 사격용은 생략할 수 있다.)
		나. 낙하시험	1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 및 작동의 결함이 없을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KSA ISO 2859-1의 부표1의 특별검사수준 S-3 보통검사의 1회 샘플링 검사방식(2.5%)을 적용하여 파손, 균열, 작동 결함 등을 검사
	성능시험	발사시험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약실에 총포의 적합한 실포, 공포탄 1발을 약실에 장전, 검사대에 총을 거치하여 발사하고 반복해서 5발을 시험발사 후 성능상 결함여부, 불발여부 등을 검사 (수입품 및 사격용은 생략할 수 있다.)

엽총 및 사격총	구조형식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일반측정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제조한 총포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일반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전체길이, 총열길이, 공기압축실길이, 노리쇠 뭉치, 기관부, 내·외경 등이 설계도면과 동일한가를 검사
		나. 재질검사	국가공인기관의 재질합격 규격품일 것	○국가공인기관의 재질검사결과 노리쇠, 공이치기, 방아쇠, 단발자, 안전장치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KS)D3752의 SM45C이상의 재질일 것 (사격총 및 수입총포는 제외) ○제조품 및 수입품검사 시 재질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다. 격발장치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	노리쇠를 후퇴전진 시킨 후 격발하여 자동 및 연속격발이 되는지 여부를 검사
		라. 방아쇠 압력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일 것(사격총은 제외한다)	방아쇠 측정기 추 1㎏을 방아쇠에 걸어 격발여부를 검사(사격총 제외)
		마.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결함이 없을 것	노리쇠를 후퇴 전진 시킨 후 안전장치를 잠금 위치에서 격발하여 격발되지 않아야하고 풀림 위치에서 격발하여 격발되는지 여부 검사. 또한, 고정시 정확한 위치가 유지되는지 검사
		바. 조준경 부착장치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공기총은 제외한다)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기총 제외)

엽총및사격총	구조형식	사.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제조연도 및 번호·형식·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장약총인 경우 식별표지를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기관부의 왼쪽에는 제조회사와 총의 종류 및 구경, 기관부의 오른쪽과 방아틀뭉치에는 제조회사별 영문 약어 2자와 제조년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 표시할 것 (수입총포 제외, 수입총은 제조국의 표시 등을 사용함)
		아. 연지탄의 에너지 및 탄속	60줄(J)이하일 것	공기압축실에 공기 또는 가스를 주입하고 법령 기준에 적합한 공기총탄을 사용, 탄속 시험하여 에너지가 60J이하인지 여부 검사
		자. 공기압축실 실린더	전체 부피는 5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체적 측정
		차. 공기총의 전체길이	공기총의 전체길이는 8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일 것(사격총은 제외한다)	길이를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사격총 제외)
		카. 총신과 압축실 실린더 재질	이은 자리가 없고 180kg/㎠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일 것	공기압축실에 컴프레서로 180kg/㎠ 공기를 주입한 후 발사하여 이상 여부 검사
		타. 탄창	탄창은 6개 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을 것	삽탄식, 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탄창에 6개 이하의 실포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
		파. 총의 구경	1) 엽총의 번경은 12번경 이내일 것 2) 공기총의 구경은 4.5밀리미터 이상 5.5밀리미터 이하	내경을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일 것.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구경은 5.5밀리미터 이상 6.4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엽총 및 사격총	안전도(내압) 시험	가. 기관부·약실 및 총열의 내압시험	1)강선총(라이플): 구경별 총포의 종류에 적합한 실탄 또는 공포탄(이하 "적합실탄"이라 한다)으로 계속 7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약실에 총포의 적합한 실포, 공포탄 1발을 약실에 장전, 검사대에 총을 거치하여 발사하고 반복해서 6발을 시험발사 후 팽창, 균열, 파열 등을 보아 검사합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2) 산탄총: 번경별 적합실탄(매그넘탄 사용총은 매그넘탄)으로 계속 5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이 경우 엽탄의 약협(藥莢)에도 결함이 없어야 한다.	번경별 적합실탄(매그넘탄 사용총은 매그넘탄) 1발을 약실에 장전, 총을 검사대에 거치하여 발사하고 반복해서 4발을 시험발사 후 팽창, 균열, 파열 등을 보아 검사합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수입품 및 사격총은 생략할 수 있다.)
		나. 공기탱크 또는 가스탱크의 내압시험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가스용수철식만 해당한다)은 180kg/㎠ 압력에 팽창이나 균열·	컴프레서로 공기압축실에 180kg/㎠ 공기를 주입하여 팽창,균열, 파열 등의 결함이 없는지 여부를 검사

			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마취총	구조형식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일반측정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제조한 총포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검사 ○일반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전체길이, 총열길이, 공기압축실 길이, 노리쇠 뭉치, 기관부, 내·외경 등이 설계도면과 동일한가를 검사
		나. 격발장치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경찰장비는 제외한다)	노리쇠를 후퇴전진 시킨 후 격발하여 자동 및 연속격발이 되는지 여부를 검사(경찰장비 제외)
		다. 방아쇠압력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일 것	방아쇠 측정기 추 1㎏을 방아쇠에 걸어 격발여부를 검사
		라. 조준경 부착장치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
		마.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제조연도 및 번호·형식·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기관부의 왼쪽에는 제조회사와 총의 종류 및 구경, 기관부 오른쪽과 방아틀뭉치에는 제조회사별 영문 약어 2자와 제조년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 표시할 것(수입총포 제외, 수입총은 제조국의 표시를 사용함)
		바. 안전장치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노리쇠를 후퇴 전진 시킨 후 안전장치를 잠금 위치에서 격발하여 격발되지 않아야하고 풀림 위치에서 격발하여 격발되는지 여부 검사. 또한, 고정시 정확한 위치가 유지되는지 검사
		사. 총열	총열에 강선이 없을 것	총열의 내부를 검사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마취총	안전도(내압)시험	가. 총열 내압시험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약실에 총포의 적합한 실포, 공포탄 1발을 약실에 장전, 검사대에 총을 거치하여 발사하고 반복해서 5발을 시험발사 후 팽창, 균열, 파열 등을 보아 검사합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수입품은 생략할 수 있다.)
		나. 공기탱크 또는 가스탱크의 내압시험	180kg/㎡ 압력에서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컴프레서로 공기압축실에 180kg/㎠ 공기를 주입하여 팽창, 균열, 파열 등의 결함이 없는지 여부를 검사
		다. 낙하시험	1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 및 작동의 결함이 없을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KSA ISO 2859-1의 부표1의 특별검사수준 S-3 보통검사의 1회 샘플링 검사방식(2.5%)을 적용하여 파손, 균열, 작동결함 등을 검사한다.
	성능시험	발사시험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약실에 총포의 적합한 실포, 공포탄 1발을 약실에 장전, 검사대에 총을 거치하여 발사하고 반복해서 5발을 시험발사 후 성능상 결함여부, 불발여부 등을 검사(수입품은 생략할 수 있다.)
가스발사총	구조형식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일반 측정 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제조한 총포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일반 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전체길이, 총열길이, 노리쇠뭉치, 기관부, 내·외경 등이 설계도면과 동일한가를 검사
		나. 격발장치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경찰장비는 제외한다)	노리쇠를 후퇴전진 시킨 후 격발하여 자동 및 연속격발이 되는지 여부를 검사(경찰장비 제외)
		다. 방아쇠압력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일 것	방아쇠 측정기 추 1kg을 방아쇠에 걸어 격발여부를 검사

		라. 조준경 부착장치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
		마.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제조연도 및 번호·형식·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몸통부분에 제조회사와 총의 종류 및 구경, 제조회사별 영문 약어 2자와 제조년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 표시할 것(수입총포 제외, 수입총은 제조국의 표시를 사용함)
		바. 최대사거리	45도의 각도로 발사하여 추진용 캡슐이 떨어지는 지점이 25미터 이하일 것	추진용 캡슐이 있는 것에 한하며, 기타 형식의 가스발사총 최대사거리는 측정치가 25m이하일 것
		사. 총의 구경	강선이 없는 것으로 16밀리미터 이하일 것	내경을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경찰장비 및 수출용 제외)
가스발사총	안전도(내압)시험	가. 기관부·약실 및 총열의 내압시험	계속 10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약실에 총포의 적합한 실포, 공포탄 1발을 약실에 장전, 검사대에 총을 거치하여 발사하고 반복해서 9발을 시험발사 후 팽창, 균열, 파열 등을 보아 검사합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수입품은 생략할 수 있다.)
		나. 낙하시험	1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 및 작동의 결함이 없을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KSA ISO 2859-1의 부표1의 특별검사수준 S-3 보통검사의 1회 샘플링 검사방식(2.5%)을 적용하여 파손, 균열, 작동결함 등을 검사
	성능시험	발사시험	계속 10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 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약실에 총포의 적합한 실포,공포탄 1발을 약실에 장전, 검사대에 총을 거치하여 발사하고 반복해서 9발을 시험발사 후 성능상 결함여부, 불발 여부 등을 검사 (수입품은 생략할 수 있다.)

폭발물분쇄총	구조형식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일반측정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제조한 총포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나. 발사장치	격발식이 아닐 것	격발식으로 발사하는지 여부를 검사
		다.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제조연도 및 번호·형식·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몸통부분에 제조회사와 총의 종류 및 구경, 제조회사별 영문 약어 2자와 제조년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 표시할 것(수입총포 제외, 수입총은 제조국의 표시를 사용함)
		라. 안전장치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안전장치를 잠금 위치에서 격발하여 결발되는지 여부를 검사
		마. 총의 구경	12.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내경을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안전도(내압)시험	기관부·약실 및 총열의 내압시험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약실에 총포의 적합한 실포, 공포탄 1발을 약실에 장전, 검사대에 총을 거치하여 발사하고 반복해서 5발을 시험발사 후 팽창, 균열, 파열 등을 보아 검사합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수입품은 생략할 수 있다.)
	성능시험	발사시험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약실에 총포의 적합한 실포, 공포탄 1발을 약실에 장전, 검사대에 총을 거치하여 발사하고 반복해서 5발을 시험발사 후 성능상 결함여부, 불발여부 등을 검사 (수입품은 생략할 수 있다.)

(별표2)

분사기의 검사기준 및 검사요령

1. 성능개조여부 검사기준 (신설 2004.11.18.)

구분	총종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구조형식	분사기	1. 구조형식의 원형유지 상태검사	○구조형식의 변형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손잡이 및 몸통 원형 유지상태 검사	○손잡이 및 몸통의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3. 제조번호의 타각유지 상태	○제조번호의 타각, 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 및 제조품·수입품 안전검사기준(개정 2011.1.1., 2025.8.29.)

가. 분말분사기

구분	총종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검사요령
구조형식	분말분사기	1.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구조는 가스용기에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말약제통에서 분사기를 통하여 분말이 분사되는 형식일 것	○일반 측정 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제조한 분사기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검사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구를 통해 분말이 분사되는 구조인지 검사
		2. 재질검사	○분말약제통은 연속5회이상 사용하여도 팽창, 균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1m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 균열이 안될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KSA ISO 2859-1의 부표1의 특별검사수준 S-3 보통검사의 1회 샘플링 검사방식(2.5%)을 적용하여 실사 및 충격시험을 하여 검사합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제조품 검사시 생략할 수 있다)
		3. 발사장치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것 ○방아쇠바늘은 연속 5회 이상 사용하여도 마모 또는 파손되지 아니할 것	○탄창장전식인지, 화약을 사용하는지 여부 검사 ○방아쇠바늘은 연속 5회 이상 실사하여 마모 또는 파손 여부검사
		4. 안전장치	결함이 없을 것	잠금위치에서 격발하여 격발되지 않아야하고 풀림위치에서 격발하여 격발되는지 여부 검사 또한 고정시 정확한 위치가 유지되는지 검사

구분	총종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검사요령
구조형식	분말분사기	5. 제조번호 등 표시	제조회사명, 제조명칭, 제조년도, 일련번호 등이 표시 되어 있을 것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손잡이 또는 몸통부분에 제조회사, 제품명칭(영문 약자 2자) 및 제조년도 2자와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 여섯자리의 숫자를 새겨서 표시할 것 (수입품 제외, 수입품은 제조국의 표시등을 사용함)
		6. 분사거리	7m 이내일것 (막대형은 10m 이내일 것)	시험발사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7. 압력사용 제한	○CO_2가스는 17g이하를 사용할 것 ○가스용기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일 것.	저울로 질량을 측정검사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인지 확인
		8. 분사기의 전체 길이	40cm 이하일 것(막대형은 60cm 이하일 것)	전체길이를 측정하여 합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9. 분사기의 구경	분사구의 직경은 4㎜이내일 것	분사기의 분출구 내경을 측정하여 4㎜이내일 것
		10. 약제통	화약을 사용하거나 분사시 약제통이 회전하는 방식이 아닐 것	시험발사하여, 분사시 약제통이 회전하는지 여부 검사

구분	총종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검사요령
안전도(내압)시험	약제통	약제통의 내압시험	이은자리가 없는 재질로 하여 20㎏/㎠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약제통 외부에 20㎏/㎠이상에서 압괴시험을 하여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제조품 안전검사시 생략할 수 있음)
약제성분시험	약제	약제의 성분검사	○약제별 성분검사를 하며 독물, 극물, 최루가스 등 법령에 의거 제조,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 ○발사되는 내용물은 120g 이하의 불연성 분말이어야 하며,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이 함유된 약제 등이 아닐 것 (다만 치안목적용 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	제조업소로부터 약제(명세서 첨부)를 받아 약제의 성분시험을 하여(국가 공인기관의 약제성분검사는 인정함)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의 포함 여부를 검사 (제조품 안전검사시 약제성분시험은 생략할 수 있음)

나. 액체분사기

구분	총종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검사요령
구조형식	액체분사기	1.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일반 측정 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제조한 총포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검사
		2. 재질검사	○1m 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 균열이 안될 것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할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KSA ISO 2859-1의 부표1의 특별검사수준 S-3 보통검사의 1회 샘플링 검사방식(2.5%)을 적용하여 실사 및 충격시험을 하여 검사합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제조품 검사시 생략할 수 있다)
		3. 발사장치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탄창장전식인지, 화약을 사용하는지 여부 검사
		4. 제조번호 등 표시	제조회사명, 제품명칭, 제조년도, 일련번호 등이 표시 되어 있을 것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손잡이또는 몸통부분에 제조회사, 제품명칭(영문 약자 2자) 및 제조년도 2자와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 여섯자리의 숫자를 새겨서 표시할 것 (수입품 제외, 수입품은 제조국의 표시 등을 사용함)
		5. 분사거리	7m이내 일 것 (막대형은 10m 이내일 것)	발사시험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구분	총종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검사요령
구조형식	액체분사기	6. 압력사용 제한	액체의 분사형태는 내장된 가스압력에 의하여야 하고 가스압력은 8kg/㎠이하일 것(가스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CO_2 가스 17g이하일 것	내장된 가스압력에 의해 분사되어야 하며 가스압력은 8kg/㎠이하일 것. (CO_2 가스용기를 쓸 경우 CO_2 가스가 17g이하인지 측정할 것)
		7. 분사기의 전체길이	20㎝이하일 것 (막대형은 60㎝이하일 것)	전체길이를 측정하여 합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8. 분사기의 모양	분사구의 직경은 4mm 이내일 것	분사기의 분출구 내경을 측정하여 4mm 이내일 것
		9. 약제통	화약을 사용하거나 분사시 약제통이 회전하는 방식이 아닐 것	시험발사하여, 분사시 약제통이 회전하는지 여부 검사
안전도(내압)시험	약제통	약제통의 내압 시험	약제통은 15kg/㎠의 압력에 균열, 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약제통 외부에 15kg/㎠이상에서 압괴시험을 하여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제조품 안전검사시 생략할 수 있음)
약제성분시험	약제	약제의 성분검사	○액체분사기의 약제는 불연성 액체를 사용할 것 ○약제별 성분검사를 하며 독물, 극물, 최루가스등 법령에 의하여 제조,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다만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	제조업소로부터 약제(명세서첨부)를 받아 약제의 성분시험을 하여(국가공인기관의 약제성분검사 인정함)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제조품 안전검사시 약제성분시험은 생략할 수 있음)

(별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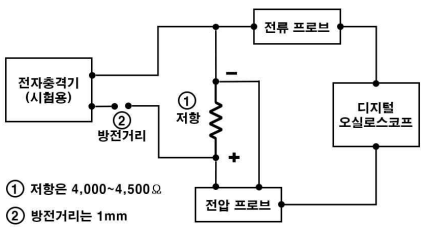
전자충격기의 검사기준 및 요령

1. 성능개조여부 검사기준 (신설 2004.11.18)

구분	총종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구조형식	전자충격기	1. 구조형식의 원형유지 상태검사 2. 전류유지 상태검사 3. 제조번호의 타각유지 상태	○구조형식의 변형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허가당시 제출한 전류가 유지될 것 ○제조번호의 타각, 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 및 제조품·수입품 안전검사 기준(개정 2014.3.31., 2025.8.29.)

구분	총종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검사요령
구조형식	전자충격기	1.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구조는 전원스위치, 단속기, 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일반 측정 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제조한 전자충격기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검사
		2. 재질검사	1m 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 균열이 안될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KSA ISO 2859-1의 부표1의 특별검사수준 S-3 보통검사의 1회 샘플링 검사방식(2.5%)을 적용하여 실사 및 충격시험을 하여 검사합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제조품 검사시 생략할 수 있다)
		3. 발사장치 여부	발사하는 장치가 없을 것(치안목적용 제외)	줄 등을 발사하여 피충격물체에 접촉하는 방식이 아닐 것
		4. 제조번호 등 표시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 제품명칭(영문 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년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제작하는 전자충격기 마다 손잡이 또는 몸통부분에 제조회사, 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제조년도 2자와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 여섯자리의 숫자를 새겨서 표시할 것 (수입품 제외, 수입품은 제조국의 표시 등을 사용함)
		5. 전자충격기의 전체길이	전체길이는 60㎝이하일 것(치안목적용 또는 수출용 제외)	전체길이(축소가능한 것은 늘렸을 때의 최대길이)를 측정하여 합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table>
<tr><th>구분</th><th>총종</th><th>검사항목</th><th>검사합격기준</th><th>검사요령</th></tr>
<tr><td rowspan="5">안전도시험</td><td rowspan="5">전자충격기</td><td>1. 실효전력 (Output Power)</td><td>10W 이내일 것</td><td>Digital Oscilloscope와 Probe를 이용하여 측정(제조품 안전검사시 샘플검사)</td></tr>
<tr><td>2. 절연상태</td><td>AC 5,000V에서 0.5mA이내일 것</td><td>절연측정기를 사용하여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제조품 검사시 생략할 수 있다)</td></tr>
<tr><td>3. 실효전류 (RMS: Root mean square)</td><td>0.05A 이내일것</td><td rowspan="3">Digital Oscilloscope와 Probe를 이용하여 측정(제조품 안전검사시 샘플검사)하며, 실효전류는 그림 1과 같이 장비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부하 저항값이 4,000~4,500Ω에 해당하는지 측정한다.
2) 시험장소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다.
3) 시험을 진행하는 전자충격기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한다.
4) 안전도 시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시험대상 전자충격기를 3~4회 정도 먼저 작동시켜 방전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5) 전자충격기의 방전되는 양쪽 부분에 리드선(Lead Wire)을 연결하거나, 그림 1과 같이 한쪽부분에 방전거리(Air Gap)를 1mm 띄워서 연결하여 측정한다.


<그림 1></td></tr>
<tr><td>4. 최대전압 (Maximum Voltage)</td><td>60,000V이내일 것</td></tr>
<tr><td colspan="2">※실효전력, 실효전류 측정시 직류(DC) 저항 4,000내지 4,500Ω을 걸어서 측정할 것</td></tr>
</table>

(별표4)

석궁의 검사기준 및 요령

1. 성능개조여부 검사기준 (신설 2004.11.18.)

구분	총종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구조형식	석궁	1. 구조형식의 원형유지 상태검사 2. 개머리 및 기관부 원형유지 상태 검사	○구조형식의 변형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개머리 및 기관부의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석궁의 화살	제조번호의 타각 유지 상태 검사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 및 제조품·수입품 안전검사 기준(개정 2011.1.1., 2025.8.29.)

구분	총종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검사요령
구조형식	석궁	1.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구조는 림, 현, 방아틀뭉치, 개머리로 구성되며 도르래형 또는 권총형이 아닐 것	일반 측정 검사공구를 사용하여 제조한 석궁이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검사
		2. 탄력성	68kg 이하일 것	탄력성을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3. 격발장치	연속격발식이 아닐 것	격발이 연속으로 되는지 여부검사
		4. 방아쇠 압력	방아쇠를 당기는 압력이 1kg이상일 것	현을 걸어 격발시 방아쇠를 당기는 압력이 1kg이상일 것
		5. 안전장치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안전장치를 잠금위치에서 격발하여 격발되지 않아야하고 풀림위치에서 격발하여 격발되는지 여부 검사. 또한 고정시 정확한 위치가 유지되는지 검사
		6. 현을 당기는 힘	도르래식이 아닐 것	현을 당기는 힘이 도르래식이아닌 일반형일 것
	석궁 및 화살	제작회사 및 제조번호 표시	제작회사, 제품명칭,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가 표시되어 있을 것	제작하는 석궁 및 화살마다 몸통에 제작회사, 제품명칭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다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하였는지 확인(수입품은 제조국의 표시 등을 사용함)
안전도시험	석궁	탄력성 검사	현을 당기는 힘이 68kg에서 현 및 림의 결함이 없을 것	현을 당기는 힘이 68kg이내에서 현 및 림의 결함이 없을 것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11.1., 2024.12.19.)

제조 · 수입품 안전검사 신청서

결재	담 당	처 장	이 사

* 접수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 호	호	허가	기 관		수수료	원	
				번 호		회 비	원	
	일 자	. . .		일 자		합 계	원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 리 인	관계(직위) : 성명 :				
	주 소							
검사품	용도 · 종류 (수량)							
	제조회사 · 명칭(수량)							
	구 경		제조번호					
	제조국		적출국		수 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2,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

<유 의 사 항>

1. 제조 · 수입품 검사신청서는 수수료 및 회비 입금 완납 확인 후 접수순으로 처리됩니다.
2. 수입품 검사신청 시 검사 품이 다양하여 기재가 곤란한 경우 수입신고서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협회계좌(하나은행 168-910004-02804), 예금주(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입금 후 전화 요망(입금자 확인)
총포안전처 (전화) 3272-4102, (팩스) 3272-4101, (이메일) gun@gesta.or.kr

* 검사수수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재정) 제1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62조 [별표18])
장약총 : 3,300원(부가세포함)
공기총 : 2,200원(부가세포함)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생산자공급가격의 2%(제조), 수입원가의 2%(수입)
* 회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재정)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8조(회비) 제1항 제3호)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검사결과보고서

번호	회 사 명 (제조·수입)	검사 월일	검사 품목	검사실적		검사내용		비 고
				수량	수수료	합 격	불합격	

상기와 같이 검사 실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총포안전처

안 전 처 장 인

검 사 원 인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04.11.18)

검사필증 일련번호 대장

20 년 월

검사일	제조회사명	검사필증일련번호	검사량	검사자

(210mm×297mm)

(별지 제3-1호 서식) (신설 2004.11.18)

검사필증 발부대장

검사필증 일련번호	검사월일	검사품목	회사명 (제조·수입)	모델	구경	제조번호	형식	적합여부		확 인	
								적합	부적합	대표자	검사자

(297mm×210mm)

(별지 제4호 서식)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검사실적보고서

제조회사명		검사 수량	판정구분		%	불합격요인		비 고 (검사품목별 수량)
			합격	불합격		구 조	성 능	
	당 월							
	소 계							
	당 월							
	소 계							
	당 월							
	소 계							
	당 월							
	소 계							
	당 월							
	소 계							
	당 월							
	소 계							
	당 월							
합 계	소 계							

(210mm×297mm)

(별지 제5호 서식)

인감등록(변경)사항보고서

총포·석궁 합격표시 스티커	가스용기 및 분사기· 전자충격기 합격표시 스티커	출처증명서용 스티커

검사원 실인

구 분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 감	

상기와 같이 인감등록(변경) 사항을 보고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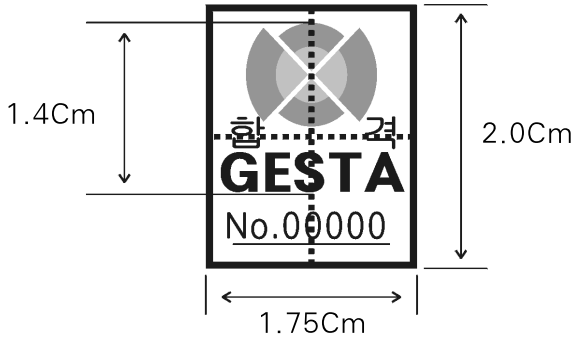
경 찰 청 장 귀하

(210mm×29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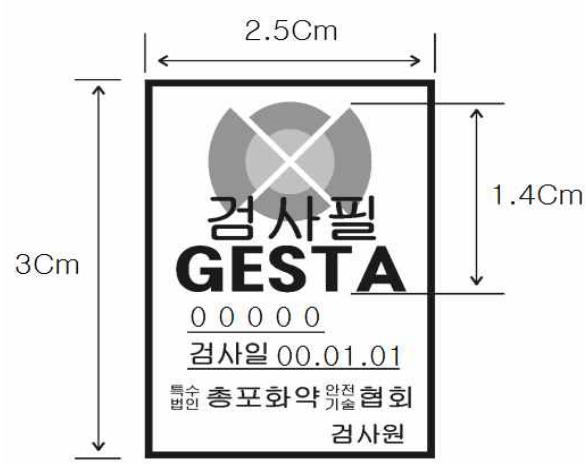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5.1.1)

스 티 커 규 격 표

◉ 합격표시 스티커



◉ 출처증명서 검사필 스티커



◉ 출처증명서 검사원실인

